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도로관리과

제정 2024・5・9 조례 제208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 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이천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·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(交通弱者)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교통약자"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이동편의시설"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步道),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- 3. "사전점검"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(이하 "대상시설"이라 한다)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사후점검"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·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 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

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·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

- 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,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(이하 "이동편의기술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
- 2.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
- 3.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
- 4.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, 단체 등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사전·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·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
 - 2.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
 - 3. 이천시 관할 공공단체 또는 기관
 - 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및 「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6조(예산의 확보)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·사후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)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「국가표준기본법」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- 제8조(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)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 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.
 - ③ 시장은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을 하되,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제9조(점검반의 구성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·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.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이천시 소속 공무원 1명
 - 2.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(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전에는 해당분야 기술 자로 한다)
 - 3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 -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·사후점검 업무
 - 2. 점검 결과보고서(이하 "보고서"라 한다) 작성
 - ③ 점검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점검반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 - 2. 점검반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, 점검,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
- 제10조(관계 공무원의 의무)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, 도로관리청 및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,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반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.
- 제11조(점검결과의 보고)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

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·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

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제12조(점검결과의 반영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